

	<h2 style="margin: 0;"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6	관리 부서	학생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 재학생의 건전한 학풍 수립과 학구열의 고취를 위해 우수한 재능을 갖추거나, 생활이 극빈한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한 자, 품행이 방정한 자,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및 생활이 극빈한 자 등으로 한다.

제3조(공고)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 학기 말 학생처에서 공고한다. 기타 장학금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방침) 학생처는 장학금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당해연도 개강 이전에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기타 장학금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5조(자격규정) 장학생으로서 학칙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는 장학사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한다.

제 2 장 장학제도

제6조(조직 및 책임) 1. 장학제도의 주무조직은 학생처이며 총 책임자는 총장이다. 총장의 부재 시 학생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2. 장학제도의 운영을 위해 장학심의위원회, 장학사정위원회 및 지도교수가 협조적으로 절차에 따라 활동한다.

3. 장학 책임부서는 매 학년도 12월 말까지 장학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한다. 또한 장학에 관한 선발절차 및 내용과 장학 선발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기타 장학금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4. 장학심의위원회는 장학금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5. 장학사정위원회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선발한다.

6. 기타 장학선발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장학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

	<h2 style="margin: 0;"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6	관리 부서	학생처

항은 재심사하여 선발한다.

7. 지도교수는 학생의 가계곤란정도, 면학의지, 다문화 가정, 다자녀가정, 봉사활동 등에 관한 상담 후, 상담 자료에 근거하여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절차) ① 장학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장학 책임부서의 장학계획 수립 후 장학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.
 2. 수립된 장학계획에 따라 장학 책임부서가 학생에게 장학에 관해 공지한다.
 3. 학생은 대학의 장학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장학신청을 한다.
 4. 지도교수는 신청자 중 적합한 학생을 선별하여 추천한다.
 5. 장학사정위원회는 선발기준에 맞추어 학생을 심사하여 선발한다.
 6. 장학 책임부서는 장학 선발자를 공지한다.
- ② 기타 장학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) 본 대학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위원)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, 학생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평생교육원장 및 직전 학생처장으로 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3.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.

1. 장학금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
2. 각종 장학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한 사항

제11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직전 학생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.

제13조(회의)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

	<h2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6	관리 부서	학생처

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및 보관하며, 차기 회의 시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위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의결)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16조(위원회) 본 대학 장학에 관한 사항을 사정하기 위하여 장학사정위원회(이하 “사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7조(위원) 사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정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및 학생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교원 2인 이상,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2. 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제18조(기능) 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정 또는 결정한다.

1.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의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20조(간사) 사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.

제21조(회의) 위원장은 사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및 보관하며, 차기 회의 시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위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	<h2 style="margin: 0;"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4/6	관리 부서	학생처

제23조(의결) ① 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24조(구분)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, 교외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25조(교내장학금) 교내장학금이란 교비로 출연한 장학금으로써,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6조(교외장학금) 교외장학금이란 외부의 장학기관, 사회단체 및 개인이 지급하는 것을 총칭하고, 그 선발에 관한 사항은 외부 장학기관, 사회단체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7조(국가장학금)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써 교육을 위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총칭하고, 그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및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및 관례에 따른다.

제29조(장학사정관계) 본 대학은 학생 맞춤형의 효율적인 장학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시행 할 수 있다.

제30조(목적) 장학사정관계의 운영 목적은 과거 가정형편 곤란 등으로 학업이 어렵지만, 장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1조 (회의) 장학사정관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장학관련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5/6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장학규정</h2>	문서번호	3-4-2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6/6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